

평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평창군수

# 평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2
----------	----

제출년월일 : 2022. 10. 20.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 새정부 도시재생사업 기초 변화에 따른 용어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여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사무의 위탁 규정 신설(안 제6조)

-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용·수익허가 및 위탁운영 가능
-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 필요 경비 지원 가능

### 나.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근거 마련(안 제7조)

-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으로 마련된 공유재산(공동이용시설)의 사용·수익 허가 시 사용료 감면 규정 명문화
- 사용료 감면을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 및 사용료 감면 대상 규정

### 다. 주민의 공동이용시설 이용 사용료 규정(안 제8조)

- 대화면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꿈의대화 특특) 사용료 근거 마련
- 시설 이용을 위한 사용신청, 승인, 내용변경을 위한 서식 마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2022.1.27. 가족복지과-4239호)

- 개선의견 반영결과 제출(2022.1.28. 도시과-3703호)

라.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022.2.3. 기획실-1824호)

마. 규 제 심 사 : 비규제 (2022.2.3. 기획실-1824호)

바. 개인정보 검토 : 수정반영 (2022.6.23. 행정과-14773호) ※반영

## 평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1조 중 “시행에”를 “밖에 평창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주민협의체”란”을 ““도시재생 관련 주민공동체”(이하 “주민공동체”라 한다)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조례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앞에 “제2장 공동이용시설의 운영·관리”를 삽입한다.

제5조를 제9조로 하고, 제3조를 제5조로 하며, 제4조를 제3조로 한다.

제6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하고, 제7조를 제13조로 한다.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하고, 제9조부

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며, 제8조를 제12조로 한다.

제5조(중전의 제3조)제1호 중 “보안·방범시설”을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시설”로, “안전율”을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주민운동시설”을 “주민운동시설, 노유자 시설, 어린이 놀이터”로, “주민공동체”를 “주민 공동체”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중전의 제4호) 중 “제3호”를 “제5호”로 한다.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전시공간, 창업지원 시설·공간 등 지역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5. 공연 및 휴게시설, 교육 및 학습 공간 등 주민의 문화와 교육·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공동이용시설 사무의 위탁 등) ①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공동이용시설을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중전의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를 “전문가를 공개채용하여 군수가 임명한

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센터에는 평창군 센터장 1명과 도시재생업무를 수행할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7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을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 등)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과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제2항의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 관련 중간지원조직”
2. 제2조2항에 따른 “도시재생 관련 주민공동체”

3.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기업”

4. 평창군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이 참여·주도하는 「평창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사회적경제 조직”

5. 그 밖에 평창군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③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등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군수에게 제출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거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대표자의 주소, 성명

3. 사용목적, 사용기간

4. 안전관리계획

5.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기여 방안

6.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8조(주민의 공동이용시설 이용) ① 군수 또는 위탁 받은자는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으로부터 별표 1에 따라 이용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이 징수한 이용요금은 시설의 관리·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 단, 지역의 주민공동체와 도시재생사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 또는 수탁기관에 시설이용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용허가 여부를 해당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주어야 한다.

④ 공동이용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주민·단체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허가 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 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 할 수 있다.

1. 군의 특별한 사정 및 천재지변으로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2. 사용일 3일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100분의 90을 반환한다.

3. 사용일 전날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반환한다.

4. 사용 개시일 이후에는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일 사용료의 100분의 70을 반환한다.

제3조(중전의 제4조)의 제목“(책무 등)”을“(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에 성별, 연령별, 계층별로 다양한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장에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평창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에서 지정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법에서 정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법 제20조에 따라 고시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법 제26조의2에 따라 인정된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포함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조례에 따른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앞에 “제3장 도시재생의 추진체계”를 삽입한다.

제9조(중전의 제5조)의 제목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을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0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평창군”을 “「평창군 군계획 조례」의”로, “대신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평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12조(중전의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사업 및 노후 도시 정비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및 홍보
2. 도시재생사업 관련 교육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등의 운영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재생사업 등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및 노후 도시 정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중전의 제7조)의 제목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센터의 구성)”으로 한다.

제15조(중전의 제10조)제1항 중 “극대화될”을 “극대화 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등 필요한”을 “있도록”으로 한다.

제16조(중전의 제11조)제1항 중 “15명”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항 및 제2항 중 “주민협의체”를 각각 “주민공동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주민협의체의 대표는 주민협의체”를 “주민공동체의 대표는 주민공동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민협의체가”를 “주민공동체가”로, “주민협의체의”를 “주민공동체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주민협의체”를 “주민공동체”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도시재생 관련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간지원조직(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사업시행 지원, 관련 교육 및 협력체계 구축, 갈등조정 및 협의 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이하 “현장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중전의 제11조)의 제목 “(주민협의체의 설립)”을 “(주민공동체의 설립)”으로 한다.

제17조(중전의 제12조) 제1항 전단 중 “주민협의체”를 “주민공동체”로 한다.

제18조 앞에 “제4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삽입한다.

제18조(종전의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군수는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 내 주민,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등과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9조(종전의 제15조)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조항”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인	주소			
	단체명		연락처	
	성명 (대표자)		출생년도	
사용일시	년 월 일( : ~ : )			
사용시설				
사용목적 (행사명)				
참석예상인원				
비고				
<p>「평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이용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p> <p>년 월 일</p> <p>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p> <p>평창군수 귀하</p>				

[뒷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평창군은 도시재생 거점시설 이용 허가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주소, 연락처, 출생년도	도시재생 시설 이용허가 및 사후관리	(이용 신청일 또는 시설 이용 종료일 이후) <b>1년 보유 후 파기</b>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평창군 공유재산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별지 제2호 서식]

##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사용허가서

신청인	주소			
	단체명		연락처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용일시	년 월 일( : ~ : )			
사용시설				
사용목적 (행사명)				
참석예상인원				
<p>「평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이용시설 사용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변경) 허가합니다.</p> <p>※ 「평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100분의 90, 사용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 100분의 80을 반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b>평창군수</b></p>				

[별지 제3호서식]

##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사용허가(취소·변경)신청서

신청인	주소			
	단체명		연락처	
	성명 (대표자)			
사용일시	년 월 일( : ~ : )			
사용시설				
사용목적 (행사명)				
변경내용	구분	당초	변경	
	사용일시			
	그 밖의 사항			
비고				
<p>「평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이용시설 사용 허가를 취소·변경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인)</p> <p><b>평창군수 귀하</b></p>				

[뒷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평창군은 도시재생 거점시설 이용허가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주소, 연락처	도시재생 시설 이용허가 및 사후관리	(이용 신청일 또는 시설 이용 종료일 이후) <b>1년 보유 후 파기</b>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평창군 공유재산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별지 제4호서식]

##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신청서

신청인	성 명(대표자)			
	주 소(단체명)			
	연 락 처	☎:	H.P:	팩스:
사용목적 (행사명)				
예상 사용인원				
사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
사용시설	기본시설			
	부대시설			
면제사유				
<p>「평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p> <p><b>평창군수 귀하</b></p>				
붙임서류 : 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뒷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평창군은 도시재생 거점시설 이용허가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주소, 연락처	도시재생 시설 이용허가 및 사후관리	(이용 신청일 또는 시설 이용 종료일 이후) <b>1년 보유 후 파기</b>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평창군 공유재산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별표 1]

##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 1. 공동이용시설 목록

시 설 명	위 치	비 고
꿈의대화 특특	평창군 대화면 대화중앙로 99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967-3)	대화면

### 2.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원)

시설명	공간명	단위	사용료	비 고
꿈의대화 특특	다목적 공간	1시간	10,000	1. 공공사용 무료 2. 공공WIFI 설치
		2시간	15,000	
		4시간	30,000	
	카페	시간	15,000	
	주방	시간	15,000	

### 3.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원)

시설명	부대시설	단위	사용료	비 고
꿈의대화 특특	컴퓨터	시간	2,000	
	냉·난방기	시간	6,000	
	빔프로젝트		10,000	회당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 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u>시행에</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u>다음과</u>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 략)</li> <li>2. “<u>주민협의체</u>”란 도시재생사 업의 추진과 관련된 공동체, 주거환경, 문화, 지역경제 등 의 다양한 의견을 조정·소통 하는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 을 말한다.</li> <li>3. (생 략)</li> </ol>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1장 총칙</u></p> <p>제1조(목적) ----- ----- ----- ----- <u>밖에</u> <u>평창군 도</u> <u>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u> <u>하여</u> ----- --.</p> <p>제2조(정의) ① ----- ----- <u>다음 각 호와</u>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u>도시재생 관련 주민공동체</u>” (이하 “<u>주민공동체</u>”라 한다)란 ----- ----- ----- -----.</li> <li>3. (현행과 같음)</li> </ol> <p>② <u>이 조례에서 별도로 정의하</u> <u>지 아니한 용어는 「도시재생</u> <u>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u> <u>법」 (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u> <u>정하는 바에 따른다.</u></p>

제4조(책무 등)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제3조(책무) ① -----  
-----  
----- 지원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에 성별, 연령별, 계층별로 다양한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평창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에서 지정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과 법에서 정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법 제20조에 따라 고시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법 제26조의2에 따라 인정된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포함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사업과 관련된 조례에 따른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평창군 사무

<신 설>

제3조(공동이용 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  
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  
설을 말한다.

1.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생 략)

<신 설>

<신 설>

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  
용한다.

제2장 공동이용시설의  
운영·관리

제5조(공동이용 시설) -----  
-----  
-----  
-----  
-----.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  
방범시설 -----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  
--
2. 주민운동시설, 노유자 시설,  
어린이 놀이터-----  
-- 주민 공동체 -----  
-----
3. (현행과 같음)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  
동창고, 전시공간, 창업지원  
시설·공간 등 지역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5. 공연 및 휴게시설, 교육 및  
학습 공간 등 주민의 문화와  
교육·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신 설>

<신 설>

시설

6. -----

제5호-----

제6조(공동이용시설 사무의 위탁

등) ①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공동이용시설을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을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 등)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과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제2항의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 관련 중간지원조직”

2. 제2조2항에 따른 “도시재생 관련 주민공동체”

3.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기업”

4. 평창군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이 참여·주도

하는 「평창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사회적경제 조직”

5. 그 밖에 평창군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③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등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군수에게 제출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거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대표자의 주소, 성명

3. 사용목적, 사용기간

4. 안전관리계획

5.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기여 방안

6.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8조(주민의 공동이용시설 이용)

① 군수 또는 위탁 받은자는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으

<신 설>

로부터 별표 1에 따라 이용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이 징수한 이용요금은 시설의 관리·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 단, 지역의 주민공동체와 도시재생사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 또는 수탁기관에 시설 이용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용허가 여부를 해당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주어야 한다.

④ 공동이용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주민·단체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허가 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 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 할 수 있다.

1. 군의 특별한 사정 및 천재지변으로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2. 사용일 3일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100분의 90을 반환한다.

3. 사용일 전날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반환한다.

4. 사용 개시일 이후에는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일 사용료의 100분의 70을 반환한다.

제3장 도시재생의 추진체계

제9조(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0조-----

1. ~ 3. (현행과 같음)

② ----- 「평

<신 설>

제5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평창군 도시재생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3.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평창

군 군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③ (생략)

<신설>

<신설>

제6조 (생략)

창군군계획조례의 -----  
대행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평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10조 (현행 제6조와 같음)

<신 설>

제8조(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

조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에 대한 업무지원  
및 협력사항
3.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  
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  
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

제11조(도시재생 관련 중간지원조

직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  
조제1항에 따라 중간지원조직  
(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을 설  
치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  
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에 대한 사업시행 지원, 관련 교  
육 및 협력체계 구축, 갈등조정  
및 협의 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  
별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이  
하 “현장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

조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사업 및 노후 도시  
정비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및 홍보
2. 도시재생사업 관련 교육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등의  
운영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재  
생사업 등의 추진 및 지원에

·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및 추진기구의 설립 등 지원

- 5. 도시재생 관련 홍보
- 6. 주민교육 및 활동가 양성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지원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주민 등의 재생관련 계획 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 ⑥ (생략)

관한 사항

- 5.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및 노후 도시 정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지원센터의 구성) ① 센터에는 평창군 센터장 1명과 도시재생업무를 수행할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  
-----  
-----  
--- 전문가를 공개채용하여 군수가 임명한다.

<삭 제>

③ ~ ⑤ (현행 제4항부터 제6



②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공감대와 참여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③ 주민협의체의 대표는 주민협의체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된다.

④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예산을 지원 받은 주민협의체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해의 관련 예산 집행내역과 다음해의 사업계획을 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공공기관, 지원센터, 주민협의체, 시민단체, 행정기관 등으로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이하 “사업추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

② 주민공동체-----  
-----  
-----  
-----  
-----.

③ 주민공동체의 대표는 주민공동체 -----  
-----.

④ ----- 주민공동체가 -----  
----- 주민공동체의 -----  
-----.

⑤ ----- 주민공동체  
-----  
-----  
-----  
-----.

제17조(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 주민공동체-----  
-----  
-----.

만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시 성  
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 ⑤ (생략)

제13조(도시재생협정) 군수는 도  
시재생사업 시행에 대한 주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협  
의체 등과 도시재생협정을 체결  
할 수 있다.

<신설>

제14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② (생략)

<신설>

제15조(지원금액의 환수)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  
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  
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  
재정법」 제32조의8 및 「평창  
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6조·제17조 (생략)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삭제>

제4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18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 내 주민, 상가건  
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등과 상  
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9조(지원금액의 환수) -----  
-----  
----- 「지방  
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조항--  
-----.

제20조·제21조 (현행 제16조 및  
제17조와 같음)

# 관 계 법 령

##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내에서 제2조 제10호 나목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1호

##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경제건설국 도시과장 오 현 응
연락처	(033) 330 - 2470